

의안
번호

231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
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경수현 의원 외 7명

나. 의안번호 : 제231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4.

2. 제안이유

가. 기존 조례가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한정하여 사회 내 1인
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,

나. 1인 가구가 아닌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로 작용
할 수 있음.

다. 따라서 성북구도 고독사 예방의 대상을 확대하여,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,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함. 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8조)

나.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규정함. (안 제2조, 안 제8조)

다. 예방 및 지원사업에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3. 11. 07. ~ 2023. 11. 13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고독사예방법”) 개정(23. 6. 13.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 하는 등 사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23. 6. 13. 시행된 「고독사예방법」 개정 취지는 창신동 모자,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, 「고독사예방법」은 홀로 사는 사람, 즉 1인 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〈23. 6. 13. 시행된 「고독사예방법」 개정 전·후〉

| 개 정 전 | 개 정 후 |
|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(개정 2023. 6. 13.) |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「고독사예방법」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의 1인 가구 용어를 삭제하고 조문 중 ‘홀로 사는’을 ‘사회적

고립상태로 생활하던'으로, '혼자 임종'을 '임종'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, 고립 가구의 정의 보완을 위해 '은둔형 외톨이' 명칭을 추가하였음.

- 안 제8조는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'은둔형 외톨이'가 추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,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였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개정안은 「고독사예방법」 개정(23. 6. 13. 시행)으로 '고독사'의 정의가 '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'에서 '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'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고독사 예방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바,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